

## 호주제의 문제점 :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곽 배희\*

### 1.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위배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만인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제도가 이 헌법조항에 이념적 토대를 두고 구현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혼인관계와 가족 등 친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이 당연하고 마땅한 명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호주제이다.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제도로서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민법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40여년간의 줄기찬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부부차별 제도로서 존치해 왔다.

호주제에 담긴 권위적이며 차별적인 사고에 기인한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호주제는 민주이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불합리, 불평등한 제도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 2)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

현재 우리 가족의 전형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며 주거를 함께 하고 자녀재생산 및 공동가계를 이루는 경제적 협력을 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족은 아직도 호주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계친족제도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핵가족의 성격이 지배적이다.<sup>1)</sup>

호주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하고 민주헌법이념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가부장제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아내, 어머니, 딸들을 열등하게 대우하고 불합리한 피해를 강요해왔다.

본 상담소에 호주제폐지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피해사례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sup>2)</sup>

### (1) 처의 부가(夫家)입적제도로 인한 갈등

가정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결합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법적 부부로 탄생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전 호적인 친정의 호적으로부터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새 호적에 들어가야만 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처(妻)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입부혼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입부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친정 호적으로부터의 제적과 남편 가(家) 호적으로의 입적은 부부, 시가, 처가 간에 ‘출가외인’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어왔다.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놓고 나아가 결혼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속적인 사람—즉 호적을 파가면 남이 되는—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는 결과가 되었다.

1) 이효재(1990),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p. 5.

2) 이하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참조

호주제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원고인단 가운데 무호주변경을 희망한 사례를 보면, 이미 혼인신고를 한지 십여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도 있지만, 혼인을 했으나 호주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있는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를 갖게되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 다양하다.

#### 사례 1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안하기로 남편과 합의를 보았다.

#### 사례 2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버텼는데 아이를 갖게되어 한 5년만에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수용의 자세로, 사실 가로놓일 현실의 문제들이 귀찮아서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바로 실제와 명분 모두 평등한 부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 (2) 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

민법은 호주승계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남자이기만 하면 연령, 가족내 위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등과 관계없이 어머니, 할머니, 누나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게 하였다.

#### 사례 3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어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 여섯 살된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된다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기에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에게 각서를 쓰도록 하여 가지고 갔더니,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각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대학졸업 학력에 서른 여섯 살된 엄마의 호주가 되는 것은 무슨 범인가?

#### (3) 남아선호의식에 기인한 남녀차별, 자녀차별, 여아 낙태 문제

아들이라면 가족내의 어른인 모든 여자를 제치고 호주가 된다. 때로는 이런 남자아이는 적법한 혼인관계에서가 아니라, 딸만 있는 집안에서 불순한 의도로 맺어진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남자로 이어지는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 등 혼인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범조차 유린되고 있다.

#### 사례 4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아쉬울 것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외도하여 아들을 낳더니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아들을 못낳은 것이 내 잘못인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20여 년 넘도록 살아온 아내와 아이들마저 배신해도 되는 건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출생한 남자아이는 32만 2천명, 여자아이는 29만4천명으로 출생 여아 1백명당 남아비율은 109.6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의 116.5, 1995년의 113.2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자연상태 출생성비인 103~107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성비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105.6과 107.6인데 셋째 아이는 143.1로 아들을 낳기 위한 다산경향은 여전하다.<sup>3)</sup>

아들을 낳기 위한 다산, 아들이라면 혼인외의 자라도 좋다는 시대착오적인 의식이 가족구성원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 (4) 가족해체촉진 요인

2000년 한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건수는 1999년보다 5.8% 늘어난 43,588건 였으며, 협의이혼건수는 역시 1999년보다 2.7% 늘어난 130,040건으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sup>4)</sup>

이혼율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담을 통하여 보면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 그리고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는 아내들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이혼이라는 가족해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협의이혼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특히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가족해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가부장적 사고의 근저에 바로 호주제가 있다.

3) 통계청(2001), 인터넷사이트 <http://queenok.hihome.com/t2.html>, “통계로 본 여성의 삶.”

4) 법원행정처(2000), 『사법연감』, p. 427, pp. 956~957; 법원행정처(2001), 『사법연감』, p. 419, pp. 928~929.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통계로 본 한국가족의 제 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2000년 상담통계』 참조.

### (5) 자의 부가(父家)입적제도로 인한 이혼가정의 호적문제

이혼후 (1990년의 개정 가족법에 의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일지라도 자녀와 한 호적을 할 수 없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며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다.

#### 사례 5

결혼 3년만에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였다. 이혼후에 보니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고 결국 남편은 나와 이혼한지 두 달만에 그 여자와 재혼하였다. 지금 네 살된 아이는 친권과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키우고 있고 양육비도 받지 않고 키우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해외여행때문에 아이의 동반여권을 만드는데 주민등록은 함께 있지만 호주가 다르니 친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호적을 요구하는데, 전 남편이 호적을 몇번이나 옮기는 바람에 동사무소 다섯곳을 전전하며 서류를 만들어야 했다. 은행에서 아이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일 것이다.

남편과 이혼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서 양육비 한 푼 받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키워도 자녀들의 호적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나아가 여권관계, 의료보험, 은행관계 등 실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권리보다 단지 호주라는 허울뿐인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 (6) 혼인외 자 문제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혼인외 자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여성들의 혼인외 자는 혼전 또는 재혼으로 인한 전 혼 자녀 문제가 많은 반면, 남성들의 혼인외 자는 혼인 중 부첩관계로 인한 혼인외 자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가 없이도 혼인외 자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성 위주, 여성억압적인 남계 혈통우선 중심의 법에 분노하는 현실이다.

#### 사례 6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재미로 살고 있던 60대 주부이다. 한 달 전 집에 30대 남자가 남편을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그 남자와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야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30여년 전 잠시 외도한 일

이 있었는데 남편은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남편의 아들은 그 동안의 보상과 자신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물질적인 보상도 문제지만 내 허락 없이 남편의 아들이 우리 호적에 오를 수 있는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 도저히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다.

민법은 남편의 혼인외 자의 입적에 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제782조),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외 자녀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혼인외 자의 경우 생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 등재되고(제855조1항), 생부가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인지청구를 통해 생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제863조).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혼인외 자의 입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아내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가에 입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제784조)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의 혈족이 아닌 자녀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나온 가부장적 가족제도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낡고 불합리한 의식이 우리 민법에 그대로 반영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7) 부성(父姓)강제로 인한 부부차별, 자녀의 고통 문제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혼모이거나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sup>6)</sup>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어있다.

6) 1997년 일부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신국적법이(1997년12월 13일 개정·공포, 1998년 6월 14일 시행) 종전의 부계혈통주의를 버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로 개정하였다(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개정은 부계혈통주의나 남편 위주로 결혼한 여성의 국적을 결정하는 구 국적법 조항이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아 헌법이나 우리 정부가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상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시 국적취득에 관하여 남녀차별을 금하는 동 협약 제9조 유보 상태의 시정필요성 등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국적법상으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계혈통주의의 불합리를 인정한 정부가 유독 민법에서만은 부계혈통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부계로 이어지는 혈통을 유지하려는 부성강제주의는 생물학적으로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과학적 주장도 있으며,<sup>7)</sup>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으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 혹은 부녀간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sup>8)</sup> 우리나라의 1999년 총 혼인건수는 362,743건, 이혼건수 118,014건, 재혼건수는 33,607건이었다. 2001년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8년 이후 3년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재혼 비율이 1991년 7.1%에서 2000년에는 14.5%로 2배 이상이 됐다. 특히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혼인은 91년 2.5%에서 지난해 4.9%로 높아졌고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도 4.6%에서 9.6%로 크게 높아졌다.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재혼한 여성은 27만여 명으로 총 혼인신고의 12%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의 가족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담소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보면 재혼의 경우 호적, 성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수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혼여성의 60~70%가 전 남편의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결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사례 7

아이가 어릴 때 재혼하였다. 성이 아빠와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알까봐 병원에서는 통사정을 하여 아이의 성을 빼고 부르게 하였으며, 아이가 원하는 통장 하나 만들어 주지 못했다. 유치원에서 새아빠의 성을 쓰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자 친구들로부터 성이 바뀌었다는 놀림만이라도 피하게 하려고 낯선 곳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아빠 그리고 새로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달라야 하는 아이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주어야 하는가?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부계혈통을 승계하려는 시도이므로 호주제 폐지의 정신과는 배치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필자의 입장은 부성(父姓)만을 강제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즉 부성만을 강제함으로써

7) 최재천(2000), “생물학적 모순, 호주제,” 《한국일보》 2000. 10. 30.

8)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참조.

무시되는 모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성을 변경할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를 하자는 것이다.

#### (8) 기혼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 차별

##### 사례 8

아버지는 경찰로 재직하다 업무중에 순직하였다. 그후 홀로 되신 어머니가 갖은 고생을 하며 우리 남매를 키웠다. 내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남동생이 어머니와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 않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수발까지 하였다. 남동생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간 어머니가 받으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 모두를 남동생이 받는다고 한다.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를 나혼자 모셨건만 결혼한 딸이기에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결혼한 딸들앞에 놓인 법적 권리의 현실이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4호는 유족연금권의 소멸시기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그 수급권자를 ‘자녀’로 하여 개정전의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나(2000. 12. 30. 개정), 타가로 입적한 딸의 연금지급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다음 순위로 하여 여전히 출가한 딸의 유족연금권리는 박탈되고 있다.<sup>9)</sup>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역시 유족의 범위 중 ‘자녀’, ‘손자녀’에 개정전의 “이중 딸(손녀)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출가한 딸과 손녀를 출가하지 않은 딸,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부보다 후순위로 하였던 것을 삭제하였다(2000. 12. 30. 개정). 그러나 동법률에서도 역시 타가로 입적한 딸(손녀)의 연금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의 다음 순위로 규정하여 출가한 딸과 손녀를 차별하고 있다.<sup>10)</sup>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3조 참조

1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참조

## 2.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본격적인 호주제폐지운동에 앞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분석대상 1,809명).<sup>11)</sup>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남녀차별 및 남아선호 사상에 대하여

조사대상의 94%가 ‘남녀차별적 대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대답해 아직도 일상 생활 곳곳에서 남녀차별적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아선호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대를 잇기 위하여’, ‘무조건 아들이 좋아서’, 또는 ‘가족들이 아들을 바라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아들을 낳겠다’는 의견도 35%나 되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키우거나 이웃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67%로 나타나 성장과정에서부터 딸이 아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호주제에 대하여

설문 조사 결과 호주를 ‘가족을 대표하는 집안의 어른’ 또는 ‘세대주’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84%), 이는 호주를 ‘연장자로서 집안을 대표하는 지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우위의 호주승계순위에 대하여 ‘이는 대표적인 남녀차별조항이며 따라서 이를 연장자 순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70%).

호주제존폐에 대하여 호주제존속지지 비율은 35.3%, 폐지비율은 41.7%로 폐지 주장이 6.4%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한 사람도 23%나 되었다.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설문에는 가장 많은 43.6%가 ‘현재 실

11) 이하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9),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참조

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24.6%는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3) 호적제도에 관하여

호적 존재 자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하고 '주민등록 제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또는 '호적제도 자체가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이 53%로 나타났다.

이혼가정의 호적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호적을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은 남녀차별적 규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혼한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로 호적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록 이혼했다 해도 자녀는 아버지만의 자식이 아닌 어머니의 자식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어머니 호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자녀의 호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자식은 아버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사람도 29%나 되어 잘못된 관행을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하나의 제도로 인식케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호적이 남편 호적으로 입적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여성차별적인 불합리한 법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44%로 나타난 반면 '남편 호적에 입적하는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한편 '아내가 남편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제도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62%로, 국민의 성숙된 의식변화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녀의 성·본 결정에 관하여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게 한 민법규정이 '부모차별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8%였던 것에 비해 '아버지 성·본을 따르도록 한 현행제도는 당연한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8%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국민

들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차별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버지 성·본을 따르도록 한 부자동성원칙은 실상 남녀차별, 부모차별의 근간이 되는 불평등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버지 성·본을 따르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은 45%였고 ‘민법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이 55%나 되어 법과 제도를 고침으로써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자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26.9%에 불과했고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27.3%)’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5.8%)’는 주장은 73%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혼 가정 자녀의 성·본에 대하여 계부의 성·본으로의 변경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묻는 설문에서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였고 ‘부모의 성을 공동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나 두가지 방안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자녀 스스로 성·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5.6%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법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게 했던 부자동성원칙은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그동안 호주제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해 113개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였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호주제의 폐해를 알리고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호주제 피해자들로 원고인단을 구성,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sup>12)</sup>

위헌소송의 1단계로 지난 해 말 제기했던 호주제 불복신청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

12) 호주제폐지운동일지에 대하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참조.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함으로써 호주제의 위헌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 1) 호적편제방안

호주제 폐지 이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과 '1인1적 편제방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하는 편제방식이다. 부부가 이혼하면 신분등록부는 분리되어 자녀는 부모 중 친권자로 결정된 쪽의 기록에 오른다. 이 방식은 한 호적으로 친족관계를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현재 한국에서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1인 1적 편제방식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개개인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자신의 신분기록을 갖는 것이다. 개인별 호적 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고,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른 가족의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반영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 2) 자녀의 성

자녀가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전자도 같이 이어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로 하여금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모계를 무시하고 부계혈통만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6조의 가족성 선택에 있어 부부로서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조항을 유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성을 강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성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4. 맷음말

호주제는 우리 가족제도에 아무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가족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호주제

---

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이며,<sup>13)</sup> 우리의 전통도 미풍양속도 아니다.

가족은 부계조상으로부터 아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독립한 인격주체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혼인에 의해 창조되고 시작되었으며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호주제가 없어진다 하여 가족이 붕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활모습,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실생활을 그대로 편견없이 법제도 내로 끌어들여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법의 개선만이 있을 뿐이다.

---

13)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하여는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pp. 24~47 참조.